

91 歲入, 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

檢 討 報 告 書

1992. 12.

運 營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목 차

I. 결산 현황	46
1. 세입결산 총괄	46
2.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	48
3. 세출결산 총괄	52
4. 과목별 세출결산	53
II. 의회사무처 소관	55
1. 예산 개요	55
2. 검토내역	57
3. 검토의견	59

I. 결 산 현 황

1. 세입결산총괄

(단 위 : 백 만 원)

회 계 별	예 산 액 (1)	징 결 정 액 (2)	수 납 액 (3)	비 율		불 납 결 손 액	미수납액
				1:3	2:3		
합 계	410,609	453,663	444,198	108.2	97.9	179	9,286
일 반 회 계	335,512	375,666	368,935	110.0	98.2	122	6,609
특 별 회 계	75,097	77,997	75,263	100.2	96.5	57	2,677
○ 공 기 업							
- 공영개발사업	27,997	30,263	27,586	98.5	91.1	-	2,677
- 지역개발기금	31,647	31,810	31,810	100.5	100	-	-
○ 도로보수중기 운 영 관 리	1,443	1,349	1,349	93.4	100	-	-
○ 주 택 사 업	1,171	1,680	1,680	143.5	100	-	-
○ 의 료 보 호 기 금	11,788	11,740	11,740	99.6	100	-	-
○ 새 마을 소득 지원	414	438	438	105.8	100	-	-
○ 공 유 림 관 리	637	717	660	103.7	100	57	-

-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,106억 9백만원에 대하여 110%에 해당하는 4,536억 6천 3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.
-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30억 5천 4백만원은 일반회계가 93.3%인 401억 5천 4백만원.
- 특별회계에서 6.7%인 29억이 징수 결정 되었음.
- 미수납액 92억 8천 6백만원은 일반회계가 71%인 66억 9백만원 특별회계가 26억 7천 7백만원으로 29%임
- 불납결손액 1억 7천 9백만원 내역은 일반회계가 1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5천 7백만원임.

2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

가. 일반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1)	징결 정액 (2)	수납액 (3)	비율			분납 결손액	미 수납액
				1:2	1:3	2:3		
합계	335,511	375,665	368,934	112.0	110.0	98.2	122	6,609
지방세	66,560	104,125	97,810	156.4	146.9	93.9	98	6,217
세외수입	82,873	86,943	86,527	104.9	104.4	99.5	24	392
○ 재산임대수입	38	51	48	133.5	126.6	94.9		3
○ 사용료수입	2,523	3,710	3,698	147.0	146.6	99.7		12
○ 수수료수입	3,501	3,836	3,836	109.6	109.6	100		-
○ 사업장수입	775	789	789	101.7	101.7	100		-
○ 이자수입	1,900	2,905	2,905	152.9	152.9	100		-
○ 재산매각수입	4,420	5,333	5,320	120.7	120.4	99.8		13
○ 이월금	61,526	61,526	61,526	100.0	100.0	100		-
○ 부담금	3,967	4,204	4,204	113.7	113.7	100		-
○ 잡수입	4,142	4,405	4,159	106.4	100.4	94.4		246
○ 과년도수입	81	184	42	226.5	51.6	22.8	24	118
지방양여금	12,397	12,397	12,397	100.0	100.0	100		-
지방교부금	77,899	77,899	77,899	100.0	100.0	100		-
보조금	95,782	94,301	94,301	98.5	98.5	100		-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,355억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112.0%에 해당하는 3,756억

6천 5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

○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01억 5천 4백만원의 내역은

· 지방세의 세원발굴등으로 375억 6천 5백만원

· 세외수입에서 40억 7천만원이 초과 징수 결정되었고, 국고보조금이 예산액보다

14억 8천 1백만원이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.

○ 징수결정된 3,756억 6천 5백만원중 98.2%에 해당하는 3,689억 3천 4백만원이 수납

되었고,

미수납액 67억 3천 1백만원중 결손처분된 1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66억 9백만원은

익년도로 이월되었음.

나. 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 (1)	징 결 정 액 (2)	수 납 액 (3)	비 율			불 납 손액 (4)	미수납액 (5) (2-3-4)
				1:2	1:3	2:3		
합 계	75,097	77,997	75,263	103.8	100.2	96.5	57	2,677
○공영개발사업	27,997	30,263	27,586	108.1	98.5	91.2		2,677
○지역개발기금	31,647	31,810	31,810	100.5	100.5	100		
○도로보수증기 운 영 관 리	1,443	1,349	1,349	93.5	93.5	100		
○주 택 사 업	1,171	1,680	1,680	143.5	143.5	100		
○의료보호기금	11,788	11,740	11,740	99.6	99.6	100		
○새마을 소득 지 원	414	438	438	105.8	105.8	100		
○공유림관리	637	717	660	112.5	103.7	92.1	57	

○ 공영개발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0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103.9%에 해당하는 779억 9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 하므로써 29억원이 초과징수결정되었는바,

그 내용은 .

-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 6천 6백만원
-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억 6천 3백만원
- 주택 사업 특별회계 5억 9백만원
-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천 4백만원
-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8천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된 반면
- 중기관리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.
 - 중기관리 특별회계 △ 9천 4백만원
 -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△ 4천 8백만원

○ 징수결정된 779억 9천 7백만원중 96.5% 해당액인 752억 6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6억 7천 7백만원이 미수되었고,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서 5천 7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,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음.

3. 세출결산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 (1)	지출원인 행 위 액 (2)	지 출 액 (3)	비 율 1:3	다음년도 이 월 액 (5)	불 용 액 (6)
합 계	410,609	360,358	349,377	85.1	21,423	39,809
일 반 회 계	335,512	314,417	303,865	90.6	20,993	10,654
특 별 회 계	75,097	45,941	45,512	60.6	430	29,155
○ 공 기 업	59,644	31,556	31,127	52.2	430	28,087
- 공영개발사업	27,997	16,345	15,916	56.8	430	11,651
- 지역개발기금	31,647	15,211	15,211	48.1		16,436
○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	1,443	1,179	1,179	81.7		264
○ 주 택 사 업	1,171	1,006	1,006	85.9		165
○ 의료보호기금	11,788	11,598	11,598	98.4		190
○ 새마을소득지원	414	412	412	99.4		2
○ 공 유 림 관 리	637	190	190	29.9		447

○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,106억 9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 3,493억

7천 7백만원으로서 평균 85.1%를 집행하였으며

○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90.6%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60.6%임.

4. 과목별 세출결산

가. 일반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 (1)	원 행 위 액 (2)	지 출		다음년도 이월액 (4)	불 용 액 (5)
			금액(3)	비율		
합 계	335,512	314,417	303,865	90.6	20,993	10,654
의 회 비	2,817	2,236	2,236	80.7	-	581
일 반 행 정 비	29,517	23,349	22,097	73.9	5,227	2,193
사 회 복 리 비	46,206	44,052	42,295	91.5	2,096	1,815
산 업 경 제 비	69,650	62,982	62,663	90.0	5,253	1,734
지 역 개 발 비	133,513	131,073	123,939	92.8	8,327	1,247
문 화 및 체 육 비	11,630	11,120	11,030	94.8	90	510
민 방 위 운 영 비	2,141	2,018	2,018	94.2		123
지 원 제 비	40,038	37,587	37,587	93.9		2,451

○ 1991년도 지출액은 3,038억 6천 5백만원으로 예산규모 3,355억 1천 2백만원

대비 90.6%이며 예산현액의 6.2%인 209억 9천 3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.

나. 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 출		다음년도 이월액	불 용 액 (5)
			금 액	비율		
합 계	75,097	45,941	45,512	60.6	430	29,155
○ 공 영 개 발 사 업	27,997	16,345	15,916	56.8	430	11,651
○ 지 역 개 발 기 금	31,647	15,211	15,211	48.1		16,436
○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	1,443	1,179	1,179	81.7		264
○ 주 택 사 업	1,171	1,006	1,006	85.9		165
○ 의 료 보 호 기 금	11,788	11,598	11,598	98.4		190
○ 새마을·소득 지원	414	412	412	99.4		2
○ 공 유 림 관 리	637	190	190	29.9		447

○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외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750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55억 1천 2백만원으로서 60.6%를 집행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,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보면

- 중기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2억 6천 4백만원
-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 1억 6천 5백만원
-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1억 9천만원
-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불용액 2백만원
-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4억 4천 7백만원임.

II. 議會事務處 所管

1. 決算概要

가. 忠清北道 一般會計 歲出決算案 (規模)

(單位：百萬圓)

會計別	豫算額 (1)	支出原因 行爲額(2)	支出額 (3)	比率	다음年度 移越額(5)	不用額 (6)
				3:1 (4)		
一般會計	335,512	314,417	303,865	90.6	20,993	10,654

- 91年度 歲出豫算額は 3,355億1千2百萬圓의 90.6%인 3,038億6千5百萬圓을 支出하였으며 209億9千3百萬圓을 翌年度로 移越 處理하고 106億5千4百萬圓은 不用 處理하였음.

나. 議會事務處 一般會計 歲出決算案 (規模)

(單位 : 千圓)

會計別	豫算額 (1)	支出原因 行爲額 (2)	支出額 (3)	比率 (%) (3):(1)	不用額 (6)
合計	2,817,276	2,235,874	2,235,874	79.4	581,402
選舉費	1,444,900	1,195,610	1,195,610	82.8	249,290
地方議會運營	1,372,376	1,040,264	1,040,264	75.8	332,112
○ 議會運營	954,376	823,524	823,524	86.3	130,852
. 人件費	231,396	159,870	159,870	69.1	71,526
. 官署運營費	587,234	532,582	532,582	90.7	54,652
. 經常事業費	135,746	131,072	131,072	96.6	4,674
○ 議政活動	418,000	216,740	216,740	51.9	201,260
. 基本經常費	342,000	150,297	150,297	44.0	191,703
. 經常事業費	76,000	66,443	66,443	87.4	9,557

- 1991年度 一般會計 歲出豫算額は 28億1千7百276千圓이며 이중 79.4%인 22億.35百874千圓을 支出하고 5億8千1百402千圓을 不用 處分하였음.

2. 檢 討 內 譯

1991年度 一般會計 歲出豫算 執行狀況을 內譯別로 檢討한 바;

- 議會運營豫算額은 9億5千4百376千원이며 이중 86.3%인 8億2千3百524千원을 支出하고 1億3千852千원은 不用處分하였음.

이를 細分하여 보면

첫째, 人件費 2億3千1百396千원중 69.1%인 1億5千9百870千원을 支出하고 7千1百526千원을 不用處分하였음.

그 理由는 地方議會가 豫定日보다 3個月 늦은 1991年 7月 8日에 開院되어 6個月分의 豫算만을 執行한데 基因됨.

둘째, 官署運營費 5億8千7百234千원중 90.7%인 5億3千2百582千원을 支出하고 5千4百652千원은 不用處分하였음.

그 理由는 施設裝備의 新品 購入 등으로 維持費 (故障發生 未 發生) 未執行에 基因됨.

셋째, 經常事業費 1億3千5百746千원중 96.6%인 1億3千1百74千원을 支出한 것은 議政活動 支援經費로서 正常執行한 것으로 思料됨.

- 議政活動 豫算額은 4億1千8百萬원이며 이중 51.9%인 2億1千6百740千원을 支出하고 2億1百260千원을 不用處分하였음.

이를 細分하여 보면

첫째, 基本經常費 3億4千2百萬원중 44%인 1億5千297千원을 支出하고 1億9千1百703千원은 不用處分하였음.

그 理由は 日費인 其他手當等 豫算額 1億9千萬원중 62.6%인 1億1千9百萬550원을 執行하였으며, 旅費, 其他附帶費등 補償金에 있어서도 1億5千2百萬원중 20.4%에 不過한 3千747千원이 執行된데 基因되고 있음.

둘째, 經常事業費는 7千6百萬원중 87.4%인 6千6百443千원을 執行하고 9百557千원을 不用處分하였음.

議政活動에 있어 不用額이 많이 發生된 것은 開院이 3個月 늦어짐에 따른 豫算 未執行에 基因된다고 하겠음.

3. 檢 討 意 見

- 決算檢査의 目的은 地方議會가 地方自治團體의 豫算執行結果에 對하여 正當性和 合法性을 確認하고 不法不當한 事項이 있을 時, 是正措置토록 하여 會計秩序를 바로잡아 執行에 適正을 期하도록 함은 물론,

決算結果를 次期豫算에 反映하여 效率的인 財政運營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議會에서 決算檢査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오며,

- 今回 實施한 議會事務處 決算內譯을 檢討한 바, 一般會計 豫算의 20.6%인 5億8千1百402千원의 不用額이 發生되었으며 앞으로는 適正한 豫算所要 判斷과 合理的 執行을 통한 健全한 豫算運用으로 不用額이 過大하게 發生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됨.